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전화(02)731-6153/전송 731-6309 담당 신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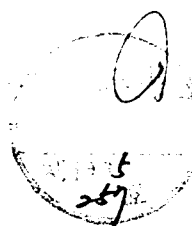
문서번호 12452 - 671

시행일자 '95. 9. 18

(경유) (제1안)

수신 내 부 결 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보</div>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법무담당관</div>
기획관리실장	권경	
정책 기획관	이	
시정개발담당관	이	
제도 개선 계장	이	
기안 신 현 장	신	
		협조

제목 '96년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96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 '96년도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의뢰

'96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 제안모집공고문을 시보를 통하여 공고코저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96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장

125

원본대조필
 121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1996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 제안모집공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계발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199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995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제안제도의 목적 및 근거

가. 목 적

- (1) 예산의 절감 및 행정능률의 향상
- (2) 시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행태의 개선
- (3) 공직사회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의 사기양양

나. 근 거

- (1)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 (2)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94.2.25
규칙제2603호, 전문개정

2. 제안모집기간

- 가. 1 회 : '95. 10. 1 ~ '96. 3. 31
나. 2 회 : '96. 4. 1 ~ '96. 9. 30

3.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대상

가. 제안자의 자격

- (1)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제출 가능
다만 특수경력직중 정무직·전문직공무원은 제안자격 없음
- (2)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내역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에 따라 주제안자,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공동제안을 하게된 구체적인 사유서를 따로 붙여야함.
- (3) 소속국장 또는 사업소장이 추천한 직무제안은 창의적으로 행정을 개선한 기안자 1인에 한하여 제안자격이 있음

나. 제안대상

- (1)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방안
- (2) 세수입 증대방안
- (3) 시민 편익증진 방안
- (4) 물품관리의 효율화 방안
- (5) 유류·전력 등 에너지 절약 방안
- (6) 기타 기계, 설비·장비·공구 등의 발명 또는 개선사항

4. 제안으로 볼 수 없는것

-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또는 이용되고 있는것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것
-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것
- 라.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것

다.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1) 자유제안 :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는 제안
- (2)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국장 및 사업소장(3급이상 사업소장을 말한다)이 추천하거나, 자치구 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채택된제안이나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

나. 제안의 제출방법

- (1) 「자유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3부작성 제안자가 우편이나 문서함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 (2)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을 3부작성 추천권자인 소속국장,사업소장(3급이상 사업소장) 및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 다만 소속국장 및 사업소장이 추천한 직무제안은 최초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때에는 설계도, 사진, 비디오 테이프등 제안내용을 실증 할 수 있는 자료첨부

- * 동일한내용의 제안이 둘이상 접수된때에는 먼저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실물로 제출된 고안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반환할 수 있음.

- 다. 제출장소 자치구(구청장 권한사항) : 기획예산과
 서울시(시장 권한사항) : 시정개발담당관실

6. 심사절차 및 채택기준

가. 심사절차

- (1)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안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 (2) 제안심사실무위원회: 15인이내의 5급공무원으로 구성, 「제안으로볼수 없는것」 해당여부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안건 선정
 - * 전문위원 : 사계전문가로 구성,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의 심사, 기채택창안의 실시에 따른 평가
- (3) 제안심사위원회 : 4급공무원 및 사계전문가로 구성, 제안채택 및 등급결정, 기채택 창안의 실시에 따른 상여금 지급심사등

나. 심사 및 채택기준

- (1)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기준
- (2) 채택기준 :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채택등급 결정

7. 시상 및 채택자 특전

가. 시상

- (1) 1 회 : '96. 6월중
- (2) 2 회 : '96. 12월중

나. 창안등급별 부상금 기준

구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부상금	250만원이상	150만원이상	50만원이상	30만원이상	10만원이상
(1창안당)	500만원이하	25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50만원미만	30만원미만

다. 표창훈격:채택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 규정, 모범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라.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

창안등급	인사상특전의종류	특 전 대 상
금상.은상 .동상	의무적 승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급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기능직지방공무원 ○ 소방위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에 우선권부여 또는 승급	○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일반승진 시험에의 우선응시	○ 6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특 별 승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소방경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 특별승진대상자 및 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 대상자중 승진 또는 응시해택을 받지 못한자
장려상. 노력상	특 별 승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지방공무원 ○ 기능직 지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 * 비 고 : 1. 승진의 경우 특별승진요건에 해당되거나 창안채택후 1년이내에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2. 특별승급은 구청장이 추천한 「직무제안」이외의 경우에 한한다

8. 상여금 지급

가. 요 건: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나. 상여금 지급액:창안실시결과 예산절감,세입증대,행정개선 등 그효과의 정도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9. 창안의 권리 승계

가. 채택제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의 출원 및 등록권리는 서울특별시가 승계

나. 여하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명의로 행사할 수 없음

10.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가. 시장과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나. 특히 제안제출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11. 기타 행정사항

가.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은 관보 제13064호('95.7.15)를 참고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제출

나. 1996년도 제안제도운영지침은 따로 시달하지않으므로 서울 특별시 공무원제안규칙을 참조하기 바라며, 각 구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 자체제안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바람.